

행정처분의 기준(제7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폐쇄명령, 영업정지, 업무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, 허가취소,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폐쇄명령, 영업정지, 업무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[제2호가목1), 같은 호 나목1), 같은 호 라목1), 같은 호 마목1), 같은 호 바목1), 같은 호 바목의2[1)의 경우로 한정한다], 같은 호 바목의3, 같은 호 사목1), 같은 호 자목1), 같은 호 차목1), 같은 호 카목1), 같은 호 타목1), 같은 호 거목1) 및 같은 호 너목1)·2)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거나, 수렵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
- 6)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처분 기간 1

개월은 30일로 본다.

마. 제2호다목의 폐쇄명령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설로 등록된 시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종류별로 사육 중인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령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가.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7조의2제1항제1호	지정취소			
2)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	법 제7조의2제1항제2호	경고	지정취소		
3)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·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,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(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)·양도·양수·운반·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	법 제7조의2제1항제3호	지정취소			
4)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·채취등을 한 경우	법 제7조의2제1항제4호	경고	지정취소		
5)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	법 제7조의2제1항제5호	지정취소			

기 위하여 폭발물, 덧, 창애, 올무, 함정,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,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				
6)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	법 제7조의2 제1항제6호	경고	지정취소	
7)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	법 제7조의2 제1항제7호	경고	지정취소	
8)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·양수, 양도·양수의 알선·중개, 소유,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	법 제7조의2 제1항제8호	경고	지정취소	
9)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·채취·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알선·중개를 한 경우	법 제7조의2 제1항제9호	경고	지정취소	
10)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, 조류, 양서류 및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	법 제7조의2 제1항제10호	경고	지정취소	
11)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, 덧, 창애, 올무, 함정,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	법 제7조의2 제1항제11호	지정취소		

용하거나 유독물,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						
12)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, 조류, 양서류,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	법 제7조의2 제1항제12호	경고	지정취소			
나.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의 포획·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15조 제1항제1호	허가취소				
2)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15조 제1항제2호	경고	허가취소			
3)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 받은 목적·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	법 제15조 제1항제3호	경고	허가취소			
다. 사육시설등록자가 법 제16조의8제2항을 위반한 경우						
1)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	법 제16조의8 제2항제1호	등록취소				
2)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	법 제16조의8 제2항제2호	폐쇄명령 6개월	등록취소			
3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,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	법 제16조의8 제2항제3호	폐쇄명령 1개월	폐쇄명령 3 개월	폐쇄명령 6개월	등록취소	
4)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	법 제16조의8 제2항제4호	폐쇄명령 3개월	폐쇄명령 6개월	등록취소		

<p>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</p>						
<p>5)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법 제16조의8 제2항제5호</p>	<p>경고</p>	<p>폐쇄명령 1개월</p>	<p>폐쇄명령 3개월</p>	<p>폐쇄명령 6개월</p>	
<p>6)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법 제16조의8 제2항제6호</p>	<p>경고</p>	<p>폐쇄명령 15일</p>	<p>폐쇄명령 1개월</p>	<p>폐쇄명령 3개월</p>	
<p>7)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법 제16조의8 제2항제7호</p>	<p>폐쇄명령 1개월</p>	<p>폐쇄명령 3개월</p>	<p>폐쇄명령 6개월</p>	<p>등록취소</p>	
<p>8)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</p>	<p>법 제16조의8 제2항제8호</p>	<p>경고</p>	<p>폐쇄명령 1개월</p>	<p>폐쇄명령 3개월</p>	<p>폐쇄명령 6개월</p>	
<p>9)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법 제16조의8 제2항제9호</p>	<p>폐쇄명령 1개월</p>	<p>폐쇄명령 3개월</p>	<p>폐쇄명령 6개월</p>	<p>등록취소</p>	
<p>10)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</p>	<p>법 제16조의8 제2항제10호</p>	<p>경고</p>	<p>등록취소</p>			
<p>11) 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</p>	<p>법 제16조의8 제2항제11호</p>	<p>경고</p>	<p>폐쇄명령 1개월</p>	<p>폐쇄명령 3개월</p>	<p>폐쇄명령 6개월</p>	
<p>라.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·수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</p>						
<p>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</p>	<p>법 제17조 제1항제1호</p>	<p>허가취소</p>				
<p>2)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</p>	<p>법 제17조 제1항제2호</p>	<p>경고</p>	<p>허가취소</p>			
<p>3)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 목</p>	<p>법 제17조 제1항제3호</p>	<p>경고</p>	<p>허가취소</p>			

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				
다.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1호	허가취소		
2)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2호	경고	허가취소	
3)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3호	경고	허가취소	
4)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4호	경고	허가취소	
바.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22조 제1호	허가취소		
2)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 제2호	경고	허가취소	
3)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	법 제22조 제3호	경고	허가취소	
바의2.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·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3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22조의3 제1호	허가취소		
2)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·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의3 제2호	경고	허가취소	
3)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	법	경고	허가취소	

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	제22조의3 제3호				
바의3. 야생동물 영업자가					
법 제22조의9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	법 제22조의9 제1항제1호	허가취소			
2)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 동물을 수입·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	법 제22조의9 제1항제2호	허가취소			
3)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 우	법 제22조의9 제1항제3호	허가취소			
4)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 업을 한 경우	법 제22조의9 제1항제4호	허가취소			
5) 법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(임원 중에 같은 조 제 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 한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22조의9 제1항제5호	허가취소			
바의4. 야생동물 영업자가					
법 제22조의9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					
1)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 위 등을 한 경우	법 제22조의9 제2항제1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허가취소
2)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양도·양수한 경우	법 제22조의9 제2항제2호	경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3) 법 제22조의5제4항에	법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

다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	제22조의9 제2항제3호		7일	15일	1개월
4)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의9 제2항제4호	경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5) 법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의9 제2항제5호	경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6)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·수입·반입·수출·반출·양도·양수·인공증식·보관·폐사·방사한 경우	법 제22조의9 제2항제6호	경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7)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의9 제2항제7호	경고	허가취소		
8)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를 빌려준 경우	법 제22조의9 제2항제8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허가취소
사.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	허가취소			
2)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	경고	허가취소		
3)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, 안전수칙, 포획 방법 등을	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	허가취소			

위반한 경우
아. 삭제 <2023. 1. 5.>

자.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
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
34조의5제1항을 위반한
경우

-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|
| 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
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
경우 | 법 제34조의
5제1항제1호 | 지정취소 | | |
| 2)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
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
의 구조·치료를 3회 이
상 거부한 경우 | 법 제34조의
5제1항제2호 | 경고 | 지정취소 | |
| 3) 법 제8조를 위반하여
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| 법 제34조의
5제1항제3호 | 경고 | 지정취소 | |
| 4) 법 제9조제1항을 위반
하여 포획·수입 또는 반
입한 야생동물, 이를 사용
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
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
서 취득(기후에너지환경
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
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
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
먹는 행위는 제외한다)·
양도·양수·운반·보관
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
선한 경우 | 법 제34조의
5제1항제4호 | 지정취소 | | |
| 5) 법 제34조의6제1항을
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
으로 확인되거나 걸렸
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
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
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34조의
5제1항제5호 | 경고 | 지정취소 | |
| 6) 법 제34조의10제1항을
위반하여 야생동물 살처
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
한 경우 | 법 제34조의
5제1항제6호 | 경고 | 지정취소 | |
| 7) 법 제34조의10제2항을 | 법 제34조의 | 경고 | 지정취소 | |

<p>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차.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7제7항을 위반한 경우</p> <p>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</p> <p>2)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</p> <p>3) 법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</p> <p>4)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</p>	<p>5제1항제7호</p> <p>법 제34조의7제7항제1호</p> <p>법 제34조의7제7항제2호</p> <p>법 제34조의7제7항제3호</p> <p>법 제34조의7제7항제4호</p>	<p>지정취소</p> <p>경고</p> <p>경고</p> <p>경고</p>	<p>지정취소</p> <p>지정취소</p> <p>지정취소</p> <p>지정취소</p>		
<p>카.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21제6항을 위반한 경우</p> <p>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</p> <p>2) 법 제34조의21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</p> <p>가)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·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</p> <p>나)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</p>	<p>법 제34조의21제6항제1호</p> <p>법 제34조의21제6항제2호</p>	<p>지정취소</p> <p>업무정지 1개월</p> <p>업무정지 1개월</p>	<p>업무정지 3개월</p> <p>업무정지 3개월</p> <p>업무정지 3개월</p>	<p>업무정지 6개월</p> <p>업무정지 6개월</p> <p>업무정지 6개월</p>	<p>지정취소</p> <p>지정취소</p>

경우 다) 검역관리인을 선임 하지 않은 경우	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3) 부도·폐업 등의 사유 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 영할 수 없는 경우	법 제34조의21 제6항제3호	지정취소			
다.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 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 항을 위반한 경우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1호	등록취소			
2)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2호				
가) 시설과 인력 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		등록취소			
나) 시설요건이 부족한 경 우		경고	등록취소		
다)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 우		경고	경고	등록취소	
과.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을 위반한 경우	법 제40조 제5항				
1)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 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 은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2)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 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3)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하. 삭제 <2025. 12. 12.>					
거.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 을 받은 자가 법 제47조					

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	지정취소			
2)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	경고	지정취소		
3)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	지정취소			
너.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	법 제49조제1항제1호	면허취소			
2)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49조제1항제2호	면허취소			
3) 수렵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	법 제49조제1항제3호				
가)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		면허취소			
나)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		면허정지 3개월	면허정지 6개월	면허취소	
4)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 죄행위를 한 경우	법 제49조제1항제4호	면허정지 6개월	면허취소		
5)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	법 제49조제1항제5호	경고	면허정지 6개월	면허취소	

6)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	법 제49조 제1항제6호	경고	면허정지 3개월	면허정지 6개월	면허취소
7)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	법 제49조 제1항제7호	경고	면허정지 1개월	면허정지 3개월	면허정지 6개월
8)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가)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나) 1년을 초과한 경우	법 제49조 제1항제8호	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			
9)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가) 수렵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나)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1항제9호	경고 경고	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1개월	면허정지 6개월 면허정지 3개월	면허취소 면허정지 6개월
10)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	법 제49조 제1항제10호	경고	면허정지 3개월	면허정지 6개월	면허취소